

[양식 제11호]

이혼(친권자 지정)신고서 *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,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“○”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년 월 일)

구분		남편(부)			아내(처)			
① 이혼신고사인자	성명	한글	(성 / (명)		①인 또는 서명	(성 / (명)		
		한자	(성 / (명)			(성 / (명)		
	본(한자)		전화	본(한자)		전화		
	주민등록번호		-		-			
	출생연월일							
등록기준지								
주소								
② 부양부모	부(양부)성명							
	주민등록번호							
	모(양모)성명							
	주민등록번호							
③기타사항								
④재판확정일자		(년 월 일		법원명		법원		
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.								
⑤ 친권자 지정	미성년인 자의 성명							
	주민등록번호		-		-			
	친권자		①부	효력발생일	년 월 일	①부	효력발생일	년 월 일
			②모	원인	① 협의 ② 재판	②모	원인	① 협의 ② 재판
			③부모			③부모		
	미성년인 자의 성명							
주민등록번호		-		-				
친권자		①부	효력발생일	년 월 일	①부	효력발생일	년 월 일	
		②모	원인	① 협의 ② 재판	②모	원인	① 협의 ② 재판	
		③부모			③부모			
⑥신고인출석여부		① 남편(夫)		② 아내(婦)				
⑦제출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	-			

*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「통계법」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⑧실제결혼(동거) 생활 시작일		년 월 일부터		⑨실제이혼연월일		년 월 일부터	
⑩20세 미만 자녀 수		명		⑪이혼의 종류		① 협의이혼 ② 재판에 의한 이혼	
⑫이혼 사유(택일)		① 배우자 부정 ② 정신적·육체적 학대		③ 가족간 불화		④ 경제문제 ⑤ 성격차이 ⑥ 건강문제 ⑦ 기타	
⑬국적 남편		① 대한민국(출생 시 국적취득) ② 대한민국(귀화등 국적취득, 귀화전국적:) ③ 외 국(국가명기입)		처		① 대한민국(출생 시 국적취득) ② 대한민국(귀화등 국적취득, 귀화전국적:) ③ 외 국(국가명기입)	
⑭최종 졸업학교 남편		①무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(교) ⑥대학원 이상		처		①무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(교) ⑥대학원 이상	
⑮직업 남편		*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		처		*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	

*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작성 방법

- ※ 등록기준지 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 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①란 : **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(또는 기명날인) 하여야** 하나,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(또는 기명날인)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②란 :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(본적)를 기재합니다.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,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(또는 출생연월일)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③란 :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 -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, 생년월일,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
 - 금치산자가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, 서명(또는 날인) 및 생년월일
- ④란 : 이혼판결(화해, 조정)의 경우에만 기재하고,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 - : 조정성립,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,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“재판확정일자”아래의 ()안에 “조정성립”, 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” 또는 “화해성립”, “화해권고결정”이라고 기재하고, “연월일”란에 그 성립(확정)일을 기재합니다.
- ⑤란 :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,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.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,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.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“[1]협의”에,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“[2]재판”에 “○”으로 표시하고,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.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.
- ⑥란 :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○표시를 합니다.
- ⑦란 : 제출자(신고인 여부 불문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- ⑧란, ⑨란 :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(동거)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(별거)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.
- ⑬란 : 귀화 등 국적취득에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포함합니다.
- ⑭란 :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 학교의 해당번호에 ○표시를 합니다.
 - <예시> 대학교 3학년 재학(중퇴) → 고등학교에 ○표시
- ⑮란 : 결혼할 당시의 직업에 대한 일의종류와 내용을 사업체이름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 - <예시> ○○회사 영업부 관측사원, 건축목공, ○○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, ○○상가에서 의류판매, 우리 논에서 논농사

첨부 서류

1. 협의이혼 :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.
2. 재판이혼 :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(조정·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).
3.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
 -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.
 -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(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).
 -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.
- ※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4.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.
5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
 -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: 협의이혼의 경우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원본
재판이혼의 경우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
 -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: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각 1부
6.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
 -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.
 -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.
7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
 - ① 재판상 이혼신고(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)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 - ② 협의이혼신고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
 - 신고인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)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).